

수 신 : 대구광역시의회 의장

제 목 :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

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: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2024년 2월 23일

대표 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김정옥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용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류종우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박소영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손한국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윤권근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발의의원 : 대구광역시의회 임인환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

(김태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24.02.23.

발의의원 : 김태우, 김정옥,
김재용, 류중우,
박소영, 박종필,
손한국, 윤권근,
윤영애, 이재숙,
임인환 의원
(11명)

1. 제안 이유

대구광역시 및 산하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축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,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,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를 규정(안 제3조)
- 나. 공개 범위 및 내용을 규정(안 제4조 및 제5조)
- 다. 공개의 예외를 규정(안 제7조)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 협의완료

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축 비용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,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대구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그 소속기관
 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
 - 다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
2. “공공시설물”이란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말한다.
 - 가. “공공시설”이란 공공기관이 행정, 주민편의, 미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.
 - 나. “공공건축물”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한 관공서, 공공도서관, 공연장, 전시장,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.
3. “표지판 등”이란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판, 석판 등의 표시물을 말한다.
4. “설치 및 건축비용”이란 설계비, 공사비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전체의 예산액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건축비용의 공개) ① 대구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·변경·교체·건축하는 경우, 그 설치 및 건축비용을

시 홈페이지와 표지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는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게재하고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 이 때, 게시물의 관리는 당해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한다.

제4조(공개 범위) 설치 및 건축비용을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별 설치비용이 1천만 원 이상인 공공시설로 별표에 따른 시설
2. 「건축법」 제2조에 따른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의 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

제5조(공개내용)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.

1. 시설명
2. 설치일자
3. 시공업체
4. 설치비용
5. 관리주체

② 제4조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.

1. 공사명 또는 시설명
2. 공사기간
3. 설계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)
4. 감리자의 성명(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)
5.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
6. 건축비용
7. 안전관리사항
8. 관리주체

제6조(표지판 등의 공개방법) ① 시장은 표지판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할 때, 비용·시인성 및 주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위치와 규격을 적절하게 정한다.

- ② 표지판 등은 물건별로 둔다. 다만,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합하여 표기할 수 있다.
- ③ 표지판 등은 착공 시부터 설치한다. 다만, 착공에서 준공까지 1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준공 시 설치한다.

제7조(공개예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재물조사 대상물품
 2. 도로 및 보도 포장, 맨홀 등 표지판 등의 설치로 주민 안전 및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
- ② 공시될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5조의 공개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제3조, 제6조, 제7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설치 및 건축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적용한다.

[별표]

공개 대상인 공공시설의 종류(제4조제1호 관련)

구 분	시 설 물
1. 도로·인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◦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, 보안등◦ 벤치, 미디어폴◦ 자전거 보관대
2. 교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주·정차 단속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
3. 공원·하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벤치, 음수대,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물◦ 미술작품, 조형물◦ 체육시설물(테니스장, 축구장, 운동기구 등)◦ 하천시설물
4. 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그 밖의 공공시설물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제4조(적용 범위)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·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